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814
----------	-----

2025. 1. 21.(화)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5년 1월 10일

다. 회부일자 : 2025년 1월 14일

라. 상정일자 : 2025년 1월 21일

- 제4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이방무 기획관리실장)

가. 제안사유

-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주요현안 집중 대응을 위해 부지사의 사무분장이 변경됨에 따라 충청북도 인구정책위원회 구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 14조(위원회의 구성) 개정

- 인구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“행정부지사”에서 “인구정책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”로 변경

현행	개정안
제14조(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) ② 위원장은 <u>행정부지사</u> 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	제14조(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) ② ----- <u>인구정책 업무를 관장</u> <u>하는</u> <u>부지사</u> ----- -----

3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음창규)

-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지사의 사무분장 조정에 따라 단순히 기존 조례의 자구나 표현만을 일부 수정하게 되는 비효율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, 그 내용도 적절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행정부지사”를 “인구정책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) ① (생 략) ② 위원장은 <u>행정부지사</u> 가 되고 부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 출한다. ③ ~ ⑦ (생 략)	제14조(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인구정책 업무를 관</u> <u>장하는 부지사</u> ----- ----- ③ ~ ⑦ (현행과 같음)

관련법령 발췌

□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

제23조(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) ①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·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
2.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의 중·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
3.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4.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
5.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제5항의 간사위원이 부의하는 사항

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.
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
2. 고령화 및 저출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

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2인을 두며, 간사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제4항제2호의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.

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

① 예산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적, 임의적 발생비용에 대한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·첨부하여야 한다.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 다만,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○ 사 유

- 「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부서간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, 주요현안 추진에 집중 대응하기 위한 정무부지사의 사무분장*을 반영

* 경제·복지·과학·인구·청년·공향·국회 등 업무

- 인구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정무부지사로 변경하는 것으로 별도 예산을 수반하지 않아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함

○ 작성자

-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꺾 인 숙